



현재와 미래의 고객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행정 서비스 수도 서비스 중단

### 수도 서비스 중단

컨트롤 ID:

방침 소유: 행정 서비스 소장

방침 전문가: 고객 서비스 매니저

승인 날짜:

승인 부서: 운영부

### 방침

Sweetwater 당국(이하 수도 당국)은 수도 서비스 중단 방침(이하 방침)에 명시한대로 수도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고객들의 수도 서비스 공급을 끊을 것이다.

### 목적

본 방침은 정부법 § 60370 항 이하 그리고 보건 및 안전법 § 116900 항 이하 (캘리포니아 상원 법안 998)에 규정한 바와 같이 수도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고객들을 위한 수도 서비스의 공급 중단에 관하여 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정한 것이다.

### 범위

체불되어 급수 중단이 예정된 상태이며, 수도 당국이 정산하고 제공한 모든 수도 서비스 청구서를 본 방침이 통제하도록 되어 있다.

### 절차



현재와 미래의 고객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행정 서비스 수도 서비스 중단

### 1. 체불 구좌

1.1. 수도 서비스 요금은 2개월마다 한 번 또는 수도 당국이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수도 서비스에 관한 모든 요금은 수도 당국이 우송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불해야 한다. 해당 기간 이내에 수도요금이 지불되지 않으면 체불로 간주한다. 청구서를 받으면 청구서 우송 날짜로부터 수도 서비스가 중단되는 73일째 되는 날까지 지불 조정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제 2항을 보시오.)

1.2. 구좌가 체불이 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A. 수도 청구서가 우송된 후 21일째 되는 날 독촉장이 기록 상의 고객에게 우송된다. 추가로 수도 당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서비스 주소지의 실제 입주자에게도 독촉장을 보낼 것이다. 수돗물을 마스터 미터기를 통해 공급하고, 단독 주택, 다세대 건물, 모빌홈 또는 모빌팍, 농장 노동자 숙소 등에는 각각의 미터를 통해 공급하며 주인, 매니저, 고용주는 기록 상의 고객이거나 또는 기록 상의 고객과 서비스 주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를 말한다. 만약 수돗물을 마스터 미터를 통해 공급하고 수도 당국이 입주자들에게 우편으로 독촉장을 보낼 수 없는 경우, 수도 당국은 해당 입주자들에게 독촉장을 보내기 위한 대안을 위해 성심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해당 독촉장은 체불된 구좌에 지불되어야 하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수도 당국의 고객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입주자들에게 알릴 것이다. 입주자가 수도 당국의 고객이 되기 위한 조건들은 아래의 제 5항에 설명되어 있다.

B. 수도 청구서가 우송된 후 45일째 부터 50일째 사이에 두 번째 독촉장이 기록 상의 고객에게 우송되며 만약 수도요금이 계속 체불 상태이면 입주자에게도 우송된다.



현재와 미래의 고객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행정 서비스 수도 서비스 중단

- C. 수도 청구서가 우송된 후 61 일째 부터 66 일째 사이에 자동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구좌에 기록된 전화번호로 보내질 것이며 이는 구좌가 체불이 된 상태이며 만약 계속 수도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수도 공급이 중단될 것이며, 연체료가 부과되며, 고객은 본 방침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객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 D. 수도 청구서가 우송된 후 71 일째 되는 날에는 연체료가 구좌에 부과되며 체불 통보 및 본 방침의 사본을 서비스 주소에 눈에 띄는 장소에 남길 것이며 이는 입주자에게 수도요금 체불로 인해 수도 서비스가 48 시간 이내에 중단 될 것이며, 수수료가 해당 구좌에 부과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 E. 수도 청구서가 우송된 후 74 일째 되는 날에는 수도 당국이 체불로 인해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다.
- F. 이 후에도 해당 구좌가 일주일 동안 지불이 안되면 체불로 인해 원래 급수가 중단되었던 날로부터 구좌가 해지된다. 수도 서비스를 시작하기 원하는 새로운 고객은 자신이 해당 구좌가 체불된 기간 동안 사용된 어떤 수도요금에도 책임이 없다는 것을 수도 당국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해야 할 수 있다.

### 2. 가정용 수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 상황들

- 2.1 최소 금액 지불- 수도 당국은 벌금이나 연체료 없이 최대 \$75.00 까지의 잔액을 다음 수도세 지불까지 유예할 것이다.
- 2.2 고객의 지불이 수도 당국이 허가한 연장, 할부 상환, 대안 지불 계획의 대상이거나 고객이 승인된 지불조정 계획을 준수하는 경우, 수도 당국은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수도 청구서가 우송된 후 73 일째



현재와 미래의 고객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행정 서비스 수도 서비스 중단

되는 날짜 이전에 모든 후속적인 수도 청구서를 반드시 잘 지불한다라는 약속 하에 지불이 안된 잔액에 대해 수도 당국이 연장, 할부 상환 또는 대안 지불 계획을 허락할 수 있다.

- A. 수도 당국이 승인한 연장, 할부 상환 또는 대안 지불 계획에 있어서 체납을 하거나 해당 지불 조정 계획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 후에 발생한 수도세를 체납하는 경우 수도 당국은 서비스 중단을 기준으로 적어도 영업일 5 일 전에 서비스 주소지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수도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최종 통보를 게시한 후에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다.
  - B. 수도 당국이 승인한 연장, 할부 상환 또는 대안 지불 계획에 있어서 일 년 이내에 두 번 체납을 하면 해당 고객은 두 번째 체납이 시작된 날짜로 부터 일 년 동안 연장, 할부 상환 또는 대안 지불 계획을 받은 자격이 없다.
- 2.3 추가로 만약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수도 당국은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다.
- A. 고객 또는 고객의 세입자가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 생명에 위협을 가져오거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거나, 해당 주거지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주치의로부터 받아 제출하는 경우 그리고
  - B. 고객이 재정적으로 정상적인 청구서 주기 이내에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1) 가구 중 누군가가 다음 프로그램 중 하나의 수령자라는 것을 증명할 때

- CalWorks
- CalFresh 일반 보조금
- Medi-Cal
- 추가 사회안전 보장 수입/주정부의 추가 지불 프로그램



현재와 미래의 고객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행정 서비스 수도 서비스 중단

- 여성, 유아 및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별 추가 영양 프로그램(WIC)
  - 2) 해당 가구의 수입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미만이라는 것을 위증죄 하에 진술함.
- C. 고객이 체불된 부과금에 대해 연장, 할부 상환, 대안 지불 계획을 포함하는 대안 조정 지불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는 경우.

상기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고객들을 위하여 수도 당국은 다음의 선택권 중 수도 당국의 재량으로 선택한 한 가지를 제시할 것이다. (1) 연장 (2) 할부 상환 (3) 대안 지불 계획

고객은 상기 조건들이 충족 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고객으로부터 해당 증명 서류를 수령하면 수도 당국은 서류를 검토하여 7 일 이내에 다음 중 한 가지의 행동을 취할 것이다. (1) 수도 당국이 선택한 대안 지불 조정을 통보하고 해당 지불 조정에 고객이 참여하는 것에 서명한 동의서를 요청하거나 (2) 고객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또는 (3) 상기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고객에게 알릴 것이다.

만약 고객이 상기 조건 하에 지불 조정이 허락되었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60 일 또는 이상 전까지 취하지 않는 경우, 수도 당국은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a) 연장된 날짜까지 지불하지 않은 잔액을 지불하거나 (b) 할부 상환 계획대로 금액을 지불하거나 (c) 대안 지불 계획에 따라 금액을 지불하거나 (d) 수도 서비스에 대한 현재 요금을 지불하는 것 등이다. 수도 당국은 서비스 중단을 기준으로 적어도 영업일 5 일 전에 서비스 주소지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수도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최종 통보를 게시한 후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다. 최종 통보를 받은 고객은 수도 당국에게 조사 또는 검토를 요청할 자격이 없다.



현재와 미래의 고객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행정 서비스 수도 서비스 중단

### 2.4 수도요금에 대한 분쟁 및 항소

- A. 고객은 수도요금 청구서 수령 후 7 일 이내에 수도요금에 대한 검토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검토하는 동안에는 검토가 종료되고 고객에게 결과를 보고할 때까지 해당 구좌에는 연체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수도 당국은 서면 결정을 고객에게 제공할 것이다. 수도 당국은 그 재량으로 시간에 맞게 요청하지 않은 검토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런 요청은 항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B. 시간에 맞게 검토를 요청하였지만, 수도 당국이 불리한 결정을 내린 고객의 경우, 수도 당국의 이사회 총무에게 항소 서면 통보를 수도 당국이 해당 결정을 우송한 날짜로부터 영업일 10 일 이내에 제출하여 수도 당국의 이사회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서면 항소 통지를 받은 후 이사회 총무는 이사회 모임에서 해당 문제의 심리를 결정하여 고객에게 심리 시간과 장소의 서면 통보를 적어도 심리 10 일 이전에 우송해야 한다. 이사회 결정은 최종적이다. 추가로 수도 당국의 이사회가 항소를 아직 진행하고 있는 중에는, 수도 당국이 급수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2.5 집주인-세입자 상황에서 입주자는 본 방침의 제 5 항에 의거하여 수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3. 수도 서비스 복구

3.1 일반 영업 시간 중에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수도요금 전액을 지불한 경우에는 재연 결 수수료 없이, 수도 서비스가 복구될 수 있다.

- A. 수도 당국 행정 사무실에 직접 수도요금을 지불한 경우.
- B. 수도요금을 온라인으로 지불하고 확인 번호를 받아서 지불 사실을 수도 당국에 확인한 경우.



현재와 미래의 고객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행정 서비스 수도 서비스 중단

- C. 수도요금을 수도 당국의 자동 지불 시스템을 통해 전화 상으로 지불하고 확인 번호를 받아서 지불 사실을 수도 당국에 확인한 경우
  - D. 수도 당국이 승인한 업체를 통해 현금을 지불하고 확인 번호를 받아서 지불 사실을 수도 당국에 확인한 경우
- 3.2 일반 영업시간 이후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오후 5 시부터 9 시까지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7 시에서 오후 9 시까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수도 서비스가 복구될 수 있다.
- A. 제 3.1 항 이하 B 항 부터 D 항에서 설명한 대로 수도요금을 지불한 경우.
  - B. 고객이 영업 시간 이후 수수료인 \$150 을 지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이 경우 \$150 은 다음 수도요금 청구서에 추가될 것이다.
4. 이자 면제
- 4.1 가구의 수입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미만이라는 것을 증명한 가정용 수도 고객은 수도 당국이 체납된 청구액에 대한 이자를 12 개월에 한 번 면제할 것이다. 수도 당국은 고객이 요구하는 시점에 지불이 되지 않은 이자에 대해 면제를 적용할 것이다.
  - 4.2 가정용 고객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도 당국은 가구의 수입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미만이라고 여길 것이다. (a) 가구 중 누군가가 현재 CalWORK, CalFresh 일반 보조금, Medi-Cal, 추가 안전보장 수입/주정부 추가 지불 프로그램 또는 여성, 유아,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별 보조 영양 프로그램(WIC)의 수령자일 경우 또는 (b) 가구의 수입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미만이라고 위증죄 하에 진술하는 경우 등이다.
5. 입주자 또는 세입자가 수도 당국의 고객이 되는 절차



## 행정 서비스 수도 서비스 중단

현재와 미래의 고객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5.1 제 5 항은 가정용 서비스의 부동산 주인, 집주인, 매니저 또는 운영자가 기록 상의 고객으로 이름이 나와 있고, 체불로 인한 수도 서비스 중단 통보가 발행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 5.2 만약 각각의 입주자가 예치금 조건을 포함하여 서비스의 조건들에 동의하는 경우, 수도 당국이 실제 입주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입주자가 구좌에 발생한 후속적 요금에 대해 수도 당국이 납득하는 수준에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경우 또는 수도 당국의 규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입주자들에게 선택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가능한 물리적 수단이 있는 경우, 수도 당국은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는 입주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5.3 체불 구좌에서 체납된 요금의 지불 없이, 수도 당국의 고객이 되기 위한 자격이 갖추려면, 입주자는 기록 상의 체불 고객이 집주인, 매니저, 또는 대리인이거나 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즉, 수도 당국의 재량 시점에 임대 계약, 세입 계약, 월세 영수증, 입주자가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부 서류 또는 민법 1962 항에 의거하여 공개된 정보 등을 포함한다.
- 5.4 만약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전에 수도 당국과 신용을 쌓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해당 기간 동안 입주자라는 것과 신속하게 월세를 지급한 내역은 동일한 증거가 된다.

### 6. 기타 조항

- 6.1 수도 서비스의 중단에 추가하여 수도 당국은 수도요금의 체불에 대한 가능한 다른 해결 방법을 추구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즉, 체불액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신청하거나, 청구권 또는 법적 소송을 신청하거나 체불액에 대하여 추징회사를 사용하는 것 등이다.





현재와 미래의 고객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행정 서비스 수도 서비스 중단

6.2 체불에 대한 방침 이외에 수도 당국의 모든 방침, 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수도 당국은 가진다.

### 7. 연락처

7.1 수도요금에 관한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고객은 수도 당국의 고객 서비스 직원에게 619-420-1413 으로 전화할 수 있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직접 수도 당국의 고객 서비스 부서를 방문할 수 있다.

### 참조 서류

---

보건 및 안전법 § 116900 항 이하 (SB 998, 2018)

정부법 § 60370 항 이하